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055호 2014.11.10.(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36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37호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38호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39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4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41호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 ----- 10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39호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1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40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3

뒷면에 계속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4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6
--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16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16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3-364호선) 실시 계획인가 고시 -----	20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1224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	2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124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1246호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	52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미디어과 [032-560-4142]

⑤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5조에 따라”로, “각호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비영리목적”을 “비영리 목적”으로, “의한 사용료의 50%을”을 “따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로 하고, 제3항 중 “30%”를 “30퍼센트”, “50%”를 “50퍼센트”로, 제4항의 “10%”를 “10퍼센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설등사용료”를 “시설 등의 사용료”로 하고, “50%”를 “50퍼센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천재지변등 기타”를 “천재지변 등 그 밖의”로, 같은 항 제3호 중 “동조례시행규칙”을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7조제1호 내지”를 “제7조제1호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을”을 “제1항제2호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비중”을 “설비 중”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행사”를 “그 밖의 행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시”를 “임대 시”로, “규정에 의한다”를 “규정을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임기중이라도”를 “임기 중이라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것외”를 “것 외”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탁자”라 한다)는 매년 체육센터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강하는 자”를 “수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스타”를 “포스터”, “팜플렛”을 “팸플릿”으로 하고, “5일전까지”를 “5일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의거”를 “따라”로,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사용허가시”를 “따른 사용허가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해”를 “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훼손시는”을 “훼손 시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용기간중에”를 “사용기간 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7일전까지”를 “7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자”를 “사람”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60%”를 “60퍼센트”로,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를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발생시”를 “발생 시”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언쟁시”를 “언쟁 시”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같은 항 제2호 중 “정차확행”을 “정차 반드시 준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발생시”를 “발생 시”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영장을”을 “수영장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업무의 위탁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택법시행령」 제11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다만, 두 기관이 위탁관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위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 기일까지 우리 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위탁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자는 안전점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서

2. 안전점검결과보고서

⑤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안전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반환 하여야”를 “반환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16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1. 0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푸른로16번길 9외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1. 0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4-11-07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경서동 976-113	푸른로16번길 9	2013-07-30	푸른로 시작지점부터 약 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 서구 가좌동 577-5	가정로47번길 10	2009-08-28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 서구 원창동 93-24, 96-2, 96-3, 96-4	원창로 74	2009-08-28	원창동의 동명을 따 원창동은 조선시대에 배편으로 올라온 세곡을 하역하고 보관하던 창고가 있던 해안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임	
4	인천 서구 심곡동 323-2	대평로 53	2009-08-28	옛날 넓은 평야가 있던 지역으로 대평이라 불려왔기에 지명을 반영하여 명명	
5	인천 서구 가좌동 577-6	가정로57번길 9	2009-08-28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 서구 경서동 843-20	청라한울로49번길 15	2011-02-14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 서구 원창동 84-1, 82-4, 84-8	원창로89번길 14-24	2009-08-28	원창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 서구 경서동 976-73	옥빛로 12	2013-07-30	초록색의 옥빛에서 착안	
9	인천 서구 불로동 199-9	고산후로 358	2008-12-31	고산후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	
10	인천 서구 오류동 1639-1	검단천로356번길 5	2012-10-25	검단천로 시작지점부터 3,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 서구 오류동 1640-5	원당대로 96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12	인천 서구 오류동 1628-6	검단천로356번길 12	2012-10-25	검단천로 시작지점부터 3,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 서구 왕길동 672-9	완정로165번길 33	2008-12-13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 서구 당하동 329-2	원당대로 976-76	2008-12-31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15	인천 서구 당하동 1080-20	청마로 37	2008-12-31	청마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함	
16	인천 서구 오류동 1646-1	마중로 142	2012-10-25	"나가서 맞이한다" 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16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3-364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36호(2007.07.1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 서구 불로동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3류364호선, 사업명: 불로동 중3-364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 건설과(☎560-45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4. 11. 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도로(중로3류364호선)
 - 【명칭】 불로동 중3-364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L=400m, B=12m, A=5,10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아래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용 지 조 서

불로동 중3-364호선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M2)	편입 면적 (M2)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 관계	
1	불로동	141	구	1,690	293	국	농림축산식품부				
2		135-3	과	2,998	44	박경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41-7 신라아파트 101-703				
3		135-4	전	3,156	258	강혁희 외 1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44 송도해모로아파트 115-1302				
4		150-2	구	145	107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		135-5	답	2,692	173	김경일	김포시 사우동 1263	김포농업 협동조합	김포시 국변 동 301-2(풍 무동지점)	근저 당	
6		151-3	구	238	238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		129	도	2,455	1,031	국	농림축산식품부				
8		135-7	답	1,588	158	김영원 외 3인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35-6	검단단위 농업협동 조합	김포군 검단 면 마전리 697-1	근저 당	
9		152-2	구	231	23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		156-1	구	2	2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135-6	대	660	183	김영원 외 3인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35-6	검단단위 농업협동 조합	김포군 검단 면 마전리 697-1	근저 당	
12		153-2	구	291	29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3		132	구	1,041	14	국	농림축산식품부				
14		154-2	구	17	17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5		156-2	구	7	7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6		128-3	전	5,341	138	맹은숙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324 건영아파트 104동 1605호				
17		155-2	구	251	251	삼선태순	김포군 검단면 불노리 71				
18		156-3	구	10	10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9		175-1	구	387	387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0		128-4	답	3,536	300	이한택	김포면 감정리 496	김포농업 협동조합	김포군 김포 읍 북변리 289-2	근저 당	
21		128-5	답	748	148	이한택	김포면 감정리 496				
22		175-3	답	440	440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3		120	구	7,011	128	국	농림축산식품부				
24		173-6	전	1,560	11	김형주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2-2 신명아파트 104동 302 호				
25		185-34	도	1,624	57	국	건설교통부				
26		96	구	9,971	118	국	농림축산식품부				
27		313-6	도	119	19	홍기영	충남 천안시 쌍용동 산44-1				
28		174	도	987	49	국	농림축산식품부				
계				49,196	5,103						

■ 지 장 물 조 서

번호	소 재 지	규 격	수량	소 유 자	비 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51-1	L=14.7~19.3m, B=8.3m 조립식건물	1동	서울 구로구 고척로52길 48, 113동 1503호(고척동, 고척대우아파트)	정현모
2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35-7	L=10.0m, B=4.6m 비닐하우스	1동	인천 서구 불노동 135-6	김영원 외 3인
3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52-3	L=12.3m, B=4.9m 컨테이너	1동	서울 구로구 고척로52길 48, 113동 1503호(고척동, 고척대우아파트)	정현모
4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53-1	L=13.8m, B=4.4~5.2m 조립식건물	1동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124번길 15, 101동 706호(연산동, 연산동에스케이뷰)	남용우
5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55-2	L=12.0m, B=3.1m 비닐하우스	1동	김포군 검단면 불노리 71	삼선태순
6	한전주		주	11	
7	전력맨홀		개소	2	
8	고압전선관로		M	470	
9	CCTV		개소	1	
10	체신주		개소	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224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5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등록 및 폐기사유









○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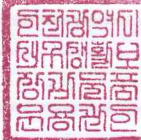






2. 공인의 최초 사용일 및 폐기년월일 : 2014년 11월 3일

3. 등록 및 폐기공인 내역

“별첨 참조”









○ 등록공인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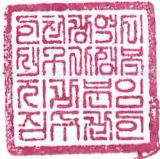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안전총괄실 분임징수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안전총괄실 분임경리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안전총괄실 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안전총괄실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안전총괄실 물품운동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생활보장과 분임징수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생활보장과 분임경리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생활보장과 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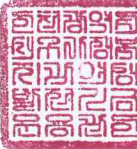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생활보장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생활보장과 물품운용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노인장애인복지과 분임징수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노인장애인복지과 분임경리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노인장애인복지과 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노인장애인복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노인장애인복지과 물품운용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여성보육과 분임징수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여성보육과 분임경리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여성보육과 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여성보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여성보육과 물품운동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여성보육과 여성발전기금운동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여성보육과 여성발전기금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 폐기공인 내역

폐기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안전관리과 분임징수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안전관리과 분임경리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안전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안전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안전관리과 물품운용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복지정책과 분임징수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복지정책과 분임경리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복지정책과 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폐기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복지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복지정책과 물품운용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과 분임징수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과 분임경리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과 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과 물품운용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가정복지과 분임징수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폐기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가정복지과 분임경리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가정복지과 분임물품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가정복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가정복지과 물품운용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운용관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출납원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4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24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11.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직원 일반정서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경조사별 휴가대상자 및 일수 일부 조정
-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 무급 단서조항 삭제로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모성보호 강화
-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근무로 인한 타성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창조적인 공직분위기 조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2. 주요내용

- 가. 연가일수 산정 재직기간 (미)산입기간 구체적 규정(안 제18조제2항)
-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재직기간 미산입

단, 육아휴직(자녀 1명에 대하여 최초의 1년, 셋째 자녀부터는 그 휴직기간 전부),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

나. 공가 근거규정 개정(안 제22조제5호)

- 2012. 9.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제25조로 개정

다. 경조사별 특별휴가 대상자 및 휴가일수 조정(안 제23조제1항 별표3)

- 직원 일반정서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경조사(사망) 시 휴가 대상자 및 휴가일수 일부 조정

라.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출산휴가 확대(안 제23조제2항)

- 현행은 임신공무원에게 임신·출산한 자녀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90일을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 다태아 임신공무원은 다태아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크므로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여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에 기여

마. 임신 초기에 출산휴가 사용 근거 마련(안 제23조제2항 단서 신설)

- 현행은 90일의 출산휴가를 출산일 전·후로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함.
-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에게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아 및 모성 보호에 기여

바.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 무급 단서조항 삭제(안 제23조 제4항)

-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 무급 단서조항 삭제를 통한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여성공무원 모성보호 강화

사.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안 제23조제9항 신설)

-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재

직자의 공로 치하 및 활기 있고 창조성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 알맞게 정비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11.25(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094 / Fax 032-560-2710 】

4.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포함한다)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은”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으로, “한다)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한다)제47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근무시간외”를 “근무시간 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비상근무에 관하여”를 “비상근무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출장기일안”을 “출장기일 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의3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의4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건기간중”을 “과건기간 중”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근무중”을 “근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휴대등”을 “휴대 등”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5일 이상”을 “15일 이상”으로, “15일미”를 “15일 미”로,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을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으로, “0.5일미”를 “0.5일 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상외”를 “부상 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을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필요한기간”을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신중”을 “임신 중”으로, “90일”을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45일이상이 되어야 한다.”를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한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23조제4항 본문 중 “임신한경우”를 “임신한 경우”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8항 중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제25조의2 중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의 규정”을 “법 제57조”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당 기타”를 “정당 그 밖의”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복무선서) ① <u>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u>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3조의2(비밀엄수) (신설 2010.12.17)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법령에 <u>의하여</u> 비밀로 지정된 사항</p> <p>2. ~ 4. (생략)</p> <p>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u>근무시간외</u>에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p>	<p><u>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u> 제1조(목적) ----- ----- 포함한다)지방공무원----- ----- -----.</p> <p>제2조(복무선서) ① <u>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u> -- <u>한다</u>)제47조에 따라-----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비밀엄수) ----- ----- ----- ----- -----.</p> <p>1. ----- <u>따라</u>-----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 <u>근무시간 외</u>----- -----</p>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생략)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생략)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비상근무에 -----
-----.

제8조(출장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출장기일
안-----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는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생략)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육아휴직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
-- 파견기간 중-----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복장등) ① ----- 근무
중 -----
-----.

② ----- 휴대
등-----
-----.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③ (생략)

④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생략)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년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
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현행과 같음)

④ -----

----- 호의 어느 하나 -----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제26조의2에 따른-----

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
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
급하고 연가에 같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
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생략)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략)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
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
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
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
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8조에 따른-----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 15일 이상-----
----- 15일 미-----
-----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 0.
5일 미만은 절사한다. (현행과 같
음)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②·③ (생략)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

③ ----- 부상 외-----

-----.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

제21조(병가) ① -----
----- 각호의 어느 하나----- 범위 안-----

----- 제20조제3항에 따른-----
-----.

1.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
----- 각호의 어느 하나-----
----- 필요한 기간 -----
-----.

1. ----- 그 밖의 ----- 따
른 -----

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생략)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8. (생략)

9.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하는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2. -----
-- 그 밖의 -----

3. 법률에 따라-----

4. (현행과 같음)

5. ----- 제
25조에 따른-----

6. -----
---- 제29조에 따른-----

7. ----- 그 밖-----

8. (현행과 같음)

9.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0. -----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교섭위
원-----

제23조(특별휴가) ① -----
----- 그 밖의 -----
----- 따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하고,
휴직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이
상이 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삭 제

라 -----.

② 임신 중-----
 ----- 90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만,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
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산한 경우에는 59일)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
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
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
하 제3호를 제외한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
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
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삭 제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인천광역시 서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 4. (생략)

제27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2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제2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
 --- 각호의 어느 하나-----

1. ~ 4. (현행과 같음)

제27조(겸직허가) ① -----
 ---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 각 호-----.

1.·2. (현행과 같음)

제2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제1항에 따른-----

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 1. (생략)
-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 3. (생략)
-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 각 호의 어
는 하나-----

- 1. (현행과 같음)
- 2. ---- 그 밖의 -----

- 3. (현행과 같음)
- 4. 정당 그 밖의 -----

-----.

관 계 법 령 발 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대통령령)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 이라 한다)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⑦ (생략)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대통령령)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7.>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1항(대통령령)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3항(대통령령)

제7조의3(특별휴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246호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1. 개정취지

-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제1조 조례제정의 목적
- 제2조 작은도서관의 정의
- 제3조 작은도서관의 기능
- 제4조 구청장의 책무
- 제5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기준
- 제6조 작은도서관 등록 및 취소
- 제7조 작은도서관 지원
- 제8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제9조 위원회 기능
-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 제11조 위원의 해촉
- 제12조 평가 및 포상
- 제13조 시행규칙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인재육성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913) 및 FAX(560-2716)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정)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중 공립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 작은도서관과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도별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의 진흥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운영기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3.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4. 도서관의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등록 등)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작은도서관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 시설환경 개선,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정책의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서구시설관리공단 도서관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신청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없는 경우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제1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에 따른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4장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13조부터 제15조로 한다.